

2026학년도 학교 업무매뉴얼[교무학사_초등] 인쇄본[책자형] 개정 내역(1차)

[2026. 7. 1. 기준]

<Ⅱ. 교수·학습 영역>

□ 제1편 교육과정운영(Ⅲ. 창의적 체험활동 편성·운영)

쪽수	구분	현행	개정
-	5. 봉사활동	☞ 봉사활동 운영 계획 수립 운영 ☞ 단위 학교 중심의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수립 운영 · 학기 중에 추가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 · 지역적·봉사활동 실적 인정 기준 확인 및 연차 1365제원봉사포탈 사군자원봉사센터 31곳 및 VMS(사회복지자원봉사 도량리분부) 사회봉사 자원봉사 사군리분부 27개소와 연계한 지역 지원 ·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을 통해 학생을 응원하려는 각종 행사, 하위·편법 확인서 발급, 실적 부풀리기, 영도, 대리 등 비교육적 행태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 단위 학교 중심의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수립 운영 -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을 통해 학생을 응원하려는 각종 행사, 하위·편법 확인서 발급, 실적 부풀리기, 영도, 대리 등 비교육적 행태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추가) - 타 기관에서 봉사활동 실적 인정 관련하여 협조 및 요청할 경우 인정 가능 여부 검토 후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 - 봉사활동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의 「2026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대한 정확한 연수 및 이해 필요, 이해 부족 및 관리 소홀로 인한 민원 예방 - 학교생활기록부 봉사활동 기록 및 지속적인 관리 필요 - 교사들이 봉사활동의 취지와 방향을 충분히 공유하고, 단위학교의 학생 봉사활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적인 봉사활동 활성화 -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시 담당교사가 반드시 임장 지도하여 봉사활동의 취지 및 안전에 유의
-	5. 봉사활동	☞ 봉사활동 시간 인정 기준의 기본 원칙 - 봉사활동 시간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이 원칙	봉사활동 인정 시간 기준의 기본 원칙 - 자원봉사활동의 기본 방향에 부합할 때 인정 - 봉사활동 시간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이 원칙
-	5. 봉사활동	· 1일 인정 8시간을 초과해 봉사활동 시간을 부여할 수 없음 · 다만, 현행은 1일 최대 봉사활동 인정 가능 시간(8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회당 4시간으로 한 학년도 3회 범위 내에서 실적으로 인정	1회당 4시간으로 당해 학년도 3회의 범위 내에서 실적으로 인정
-	5. 봉사활동	· 학생이 학년 말(2월말) 학교생활기록부 마감 후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를 이용해 봉사활동을 한 경우, 학생에게 다음 학년도에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하게 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접수를 통해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	- 학생이 학년 말(2월말) 학교생활기록부 마감 후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를 이용해 봉사활동을 한 경우, 학생에게 다음 학년도에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하게 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접수를 통해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
-	5. 봉사활동	도움 자료 ☞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제2026-339) ☞ 경기도 교육청 학교 교육과정 운영(2026. 6. 1) ☞ 2026학년도 초·중·고 교육과정 운영 안내 자료(초·중·고, 2026. 3) ☞ 2025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2026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융합교육과, 2026.2)

□ 제4편 학업성적관리

쪽수	구분	현행	개정
25	I. 학업성적관리 위원회 운영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설치의 내용 · 학교 학업성적관리과정 차가정 · 학년(학급) 평가 계획 · 교과(목) 및 학교자율시간 활동 평가 계획: (학교교육과정과 학과 포함)의 평가계획 내용으로 또는 성취 · 학기, 평가 영역, 평가 요소, 평가 방법, 평가 시기, 평가기준, 성취수준 등 ·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평가 평가 계획: 국가(교) 외부 및 학업, 평가 요소, 평가 방법 등	- 교과(목) 및 학교자율시간 활동 평가 계획: 교과(학교자율시간 과목 포함)의 평가계획 내용으로 또는 성취 기준, 평가 영역, 평가 요소, 평가 방법, 평가 시기, 평가기준, 성취수준 등

□ 제7편 학교독서인문교육

쪽수	구분	현행	개정
40	I. 학교독서 인문교육	1. 책 읽는 학교 문화 확산 ☞ 책 읽는 학생 · 학생 중심 독서 활동으로 일상적 독서 문화 확산 - 일과 중 독서 시간 확보 및 책 읽기 실천,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참여하는 책 읽기 프로그램 운영, 1교 1이상 독서 인문학 동아리 운영, 독서 발표자 참여	1. 책 읽는 학교 문화 확산 ☞ 책 읽는 학생 · 학생 중심 독서 활동으로 일상적 독서 문화 확산 - 일과 중 독서 시간 확보 및 책 읽기 실천,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참여하는 책 읽기 프로그램 운영, 학생 주도 독서 인문학 동아리 운영, 독서동용 1,2,3학년 실천자 참여
40	I. 학교독서 인문교육	☞ 학교도서관 중심 독서인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교육과정 연계 학교도서관 주간 독서인문 프로그램 운영, 교과-비교과 융합 프로그램 운영	☞ 학교도서관 중심 독서인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교육과정 연계 학교도서관 주간 독서인문 프로그램 운영, 교과-비교과 융합 프로그램 운영, 비교과를 통한 교과수업 지원 도움자료 ☞ 수업에 필요한 자료는 별도의 자료 구입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구입하여 제공하는 교 수학습자료실 제도
40	I. 학교독서 인문교육	☞ 교과-비교과 연계 독서인문교육 내실화 -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독서기반 수업 및 평가 확대 - 학교 자율시간, 자유학기, 학교주도자율시간(SAT) 활용 독서인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 다양한 주제(문학, 역사, 예술, 철학, 환경 등) 융합 독서·인문학 교육 운영 강화 - 교과-비교과 융합 학교도서관 활용(협력) 수업 활성화	☞ 교과-비교과 연계 독서인문교육 내실화 -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독서기반 수업 및 평가 확대 - 학교 자율시간, 자유학기, 학교주도자율시간(SAT) 활용 독서인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 다양한 주제(문학, 역사, 예술, 철학, 환경 등) 융합 독서·인문학 교육 운영 강화 - 교과-비교과 융합 학교도서관 활용(협력) 수업 활성화
41	I. 학교독서 인문교육	☞ 지역특화 독서인문교육 운영 · 지역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지역 독서인문교육 운영 · 경기공유학교와 연계한 지역 독서인문교육 활동 다양화 - 예: 알·씨 공유학교(옛 쓰기 프로젝트) / 창의융합 독서체험 공유학교(그림책 활동 과학실험, 나만의 그림책 만들기 등) / 북소리까지북아트 공유학교(독서 활동 인성교육 프로그램) · '책쓰기' 프로젝트 운영 확대 및 지역과 함께하는 책 축제 운영	☞ 지역특화 독서인문교육 운영 · 지역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지역 독서인문교육 운영 · 경기공유학교와 연계한 지역 독서인문교육 활동 다양화 · '책쓰기' 프로젝트 운영 확대 및 지역과 함께하는 책 축제 운영
41	I. 학교독서 인문교육	☞ 지역 독서인문교육 협력 강화 ☞ 학교도서관-교육도서관-지역공공도서관이 네트워크 활용	☞ 지역 독서인문교육 협력 강화 ☞ 지역 독서인문교육 운영 확대 및 학교 독서인문교육 연계 확대

□ 제8편 인성시민교육

쪽수	구분	현행	개정
51	Ⅳ. 인권교육	1. 학교공동체 인권교육 · 특성과 고등학교 현장실습, 학생 아르바이트 증가 등을 고려하여 근로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운영	1. 학교공동체 인권교육 · 초등학교 학생의 발달 단계와 학교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학생의 존엄성,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여권, 휴식권, 안전하게 배울 권리 등 학생 인권의 기본 내용을 포함하여 운영
51	Ⅳ. 인권교육	<도움자료> ☞ 경기도교육청 경기학생인권위광장 누리집 학생 인권 알아보기 자료실	<도움자료> ☞ 경기도교육청 경기교육공동체인권광장 누리집 자료실

□ 제11편 보건교육

쪽수	구분	현행	개정
73	I. 보건교육	☞ 수업방법 · 학교 및 전문적 학습공동체 연구 활동을 통해 지역의 보건교육 거점 역할 수행 · 교육공동체 간 협력적 배움의 관계를 통해 학생 중심 보건교육 실천과 연구 · 중앙지원단(보건교육 컨설팅단) 연계로 통한 수업 컨설팅 신청, 신규 및 재임의 보건교육 지원 · 교육과정운영 단위 보건교육 평가제도 지원 강화 · 지역 내 학생 보건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제형(현상)에 총 마면 · 연구용 활동 기반의 미래형 보건교육형 연구·개발 지원 · 중앙지원단(보건교육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운영 및 관리 · 보건교육 거점학교 운영을 통한 중·고교 확대 지원 방안	☞ 수업방법 · 학교 및 전문적 학습공동체 연구 활동을 통해 지역의 보건교육 거점 역할 수행 · 교육공동체 간 협력적 배움의 관계를 통해 학생 중심 보건교육 실천과 연구 · 중앙지원단(보건교육 컨설팅단) 연계로 통한 수업 컨설팅 신청, 신규 및 재임의 보건교육 지원 · 교육과정운영 단위 보건교육 평가제도 지원 강화 · 지역 내 학생 보건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제형(현상)에 총 마면 · 연구용 활동 기반의 미래형 보건교육형 연구·개발 지원 · 중앙지원단(보건교육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운영 및 관리 · 보건교육 거점학교 운영을 통한 중·고교 확대 지원 방안
75	I. 보건교육	도움 자료 ☞ 2025년 학교교육연계방식 지침(보건복지부 2025. 2) ☞ 2025년 중·고등학교보건교육 운영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보건교육연계교육과 2025. 6) ☞ 2025년 중·고등학교보건교육 운영 안내 서식(보건교육연계교육과 2025. 6)	도움 자료 ☞ 2025년 학교교육연계방식 지침(보건복지부 2025. 2) ☞ 2025년 중·고등학교보건교육 운영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보건교육연계교육과 2025. 6) ☞ 2025년 중·고등학교보건교육 운영 안내 서식(보건교육연계교육과 2025. 6)

<Ⅲ. 학생생활 영역>

□ 제1편 학생생활교육

쪽수	구분	현행	개정
79	I. 학생생활 교육	<도움자료> ▶ 2025 학생생활규정 운영 매뉴얼(생활인성교육과, 2025. 2.)	<도움자료> ▶ 2026 학생생활규정 운영매뉴얼(생활교육과, 2026. 3.)
80	I. 학생생활 교육	<관련법령>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 고시 제2023-34호)	<관련법령>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 고시 제2026-3호)
81	I. 학생생활 교육	3. 학생생활교육위원회 • 경기도교육청 관내 모든 학교는 학교생활교육 위원회 규정을 제·개정하여 운영해야 하며, 학생 선도관리는 각 학교의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규정 에 따라야 함	3. 학생생활교육위원회 • 경기도교육청 관내 모든 학교는 학생생활교육 위원회 규정을 제·개정하여 운영해야 하며, 학생 선도 관련 사항 은 각 학교의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규정에 따라야 함
81	I. 학생생활 교육	<도움자료> ▶ 2025 학생생활규정 운영 매뉴얼(생활인성교육과, 2025. 2.)	<도움자료> ▶ 2026 학생생활규정 운영 매뉴얼(생활교육과, 2026. 3.)

□ 제2편 학교폭력 대책

쪽수	구분	현행	개정
88	Ⅲ. 성폭력 사안처리	▶ 경기도교육청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매뉴얼(생활교육과, 2025. 8.)	<도움자료> ▶ 경기도교육청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업무 안내서(2026 개정)
89	Ⅳ. 학교 내 갈등의 화해중재	▶ 2025 화해중재단 운영 계획(생활인성교육과, 2025. 1.)	<도움자료> ▶ 2026 화해중재단 운영 계획(생활교육과, 2025. 1.)

□ 제3편 학생안전

쪽수	구분	현행	개정
94	Ⅱ. 아동학대 예방교육	※ 사안보고서 양식은 도움 자료 참조	삭제
94	Ⅱ .아동학대 예방교육	도움 자료 ▶ 2025 위기학생 지원 계획(생활인성교육과, 2025. 2.)	2026 위기학생 지원 계획 (생활교육과, 2026. 2.)

□ 제4편 학생위기지원

쪽수	구분	현행	개정
106	I 위(Wee) 클래스 운영	운영목적 ▶ 전체 학년(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표준화 검사지, 대안교실 운영, 학업중단 숙려제 등의 사업비는 위(Wee) 클래스 운영비와 별도 예산	전체 학년(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표준화 검사지, 대안교실 운영, 학업중단 숙려제 등의 사업비는 위(Wee) 클래스 운영비와 별도 예산
107	I 위(Wee) 클래스 운영	운영목표 ▶ 프로그램 결과 보고 we 위(Wee) 클래스 연간운영 보고서를 작성 시 미흡 학생들의 상담활동에 대한 평가 자료를 함께 포함하면 보고서 작성과 동시에 평가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음 ▶ 위(Wee) 클래스 상담 활동에 참여한 학생의 개인 정보지나 소견문 등을 평가 자료로 활용 가능	프로그램 결과 보고 시 위(Wee) 클래스 연간운영 보고서를 작성 시 미흡 학생들의 상담활동에 대한 평가 자료를 함께 평가 자료를 함께 포함하면 보고서 작성과 동시에 평가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음

쪽수	구분	현행	개정
108	Ⅱ 생명존중교육	2. 생명존중 교육의 달 및 생명존중 주간 집중 운영 ▶ 시기: 학생 자살 발생 비율이 높은 학기초(3월, 9월) 및 필요 시	시기: 학생 자살 발생 비율이 높은 학기초(3월, 9월) 및 필요 시
108	Ⅱ 생명존중교육	도움 자료 ▶ 2025 위기학생 지원 계획(생활인성교육과, 2025. 2.)	2026 위기학생 지원 계획(생활교육과, 2026. 2.)
109	Ⅲ 심리·정서적 위기학생 지원	도움 자료 ▶ 2025 위기학생 지원 계획(생활인성교육과, 2025. 2.) ▶ 2025 예술학대 예방 및 대처 포함 교육부문 가이드북(교육부, 2024. 12.) ▶ 위(Wee)클래스 및 센터 운영 가이드(교육부, 2024. 12.) ▶ 상담교사 지원 제공 방안 운영지침(생활인성교육과, 2024. 2.) ▶ 전문상담교사를 위한 학교상담 실무 지침서(학생생활인성교육과, 2020. 1.)	2026 위기학생 지원 계획(생활교육과, 2026. 2.)
109	Ⅱ 생명존중교육	주비 ▶ 심성 수업 준비(교의 혹은 교내) ▶ 심성 수업 장소 사전 답사, 관련 비용 준비, 필요시 전문 강사 섭외, 심성 수업과 관련된 담당교사 연수	심성 수업 준비(교의 혹은 교내) 심성 수업 장소 사전 답사, 관련 비용 준비, 필요 시 전문 강사 섭외, 심성 수업과 관련 담당교사 연수
110	Ⅲ 심리·정서적 위기학생 지원	역할 ▶ 자살(사도), 자해, 아동학대 피해 사안 확인, 피해학생 긴급 지원 ▶ 위기관리위원회 긴급회의 개최 및 세부적 대응방안 수립(협의록 작성) ▶ 사안 발생 시 1~2명에게 업무가 집중되지 않도록 공동체 협의 ▶ 필요시 교육지원청 및 도교육청 위기관리 지원 요청	위기관리위원회 긴급회의 개최 및 세부적 대응 방안 수립(협의록 작성)
110	Ⅲ 심리·정서적 위기학생 지원	도움 자료 ▶ 심성수업 프로그램 ▶ 집단상담 프로그램 ▶ 집단상담 교재 지도서	삭제
112	Ⅲ 심리·정서적 위기학생 지원	아동학대 사안 보고 ▶ 각급 학교—소속교육지원청 보고 ▶ 아동학대(의심) 사안 보고서 ▶ 중대·언론보도 사안 보고서(양식은 '2025 위기학생 지원 계획' 참조)	중대·언론보도 사안 보고서(양식은 ' 2026 위기학생 지원 계획' 참조)
113	Ⅲ 심리·정서적 위기학생 지원	6. 자살 위기 학생 관리 ▶ 자살예방 초기 대응 강화 ▶ 학생 중상·현상 특성 분석, 학업 중단 위기 학생 자살예방 초기 발견 ▶ 원인과 예방에 대한 상담, 상담의 즉시 '도'와 연계 진행 ▶ 위기 초 학부도 상담주간 활용 ▶ 담당이나 상담교사가 다음 학년 자살 예방 및 위험성 평가 ▶ 상담교사나 자살예방 책임교사로서 문제점을 통찰하여 평가한 후 일정 장수 이상이면 전문가에게 의뢰 ▶ 청소년 자살의 위험 징후: 언어의 신호, 행동적 신호, 정서적 신호 ▶ 자살기초서 연계한 자살 고위 경고 관리 운영 '다들아들'을 ▶ 학교폭력 신고 전담(☎112), 청소년 상담 전화(☎120), 청소년 위기 상담 전화(☎1091)와 연계한 자살 고위 상담 ▶ 자살 예방-전문기관(자살예방센터 등) 간의 연계를 통한 자살 예방	상담전화 -전문기관(자살예방센터 등) 간의 연계를 통한 즉각적 개입 지원
115	Ⅳ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학생 지원	기간 ▶ 속리 기간: 최소 1주~최대 7주 ▶ 주 단위 운영: 사력일로부터 7일째 되는 날까지를 1주로 함 ▶ 주말, 공휴일, 휴업일, 방학 포함(단, 정기시험 기간 제외) ▶ 자립평가 기간과 속리 기간이 겹칠 경우, 자립평가 종료를 전제하여 속리 횟수를 1회로 처리 ▶ 속리 횟수: 당해 학년의 속리 기간을 최대 2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주말, 공휴일, 휴업일, 방학 포함(단, 정기시험 기간 제외) 정기시험 기간과 속리 기간이 겹칠 경우, 정기시험 전후를 연결하여 속리 횟수를 1회로 처리
116	Ⅳ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학생 지원	매일 프로그램 ▶ 주 단위 운영(수업, 공유일, 재량휴업일 포함), 최대 5주(35일간) ▶ 1일 1회 이상의 프로그램 참여로 속리 인정 결석 처리 ▶ 운영 프로그램: 개인 상담, 집단상담, 상담 수업 프로그램,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학교 적응 프로그램, 인성 프로그램, 졸업준비자료 프로그램, 멘토링, 사례동행 프로그램, 진로 체험, 체제비 활동 등	매일프로그램 ~주 단위 운영(주말, 공휴일, 재량휴업일 포함), 최대 5주(35일간) ~1일 1회 이상의 프로그램 참여로 출석 인정 결석 처리
117	Ⅳ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학생 지원	도움 자료 ▶ 2025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매뉴얼(교육복지과, 2025. 2.) ▶ 2025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매뉴얼(교육과, 2024. 12.)	2026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매뉴얼(교육복지과, 2026. 2.)
119	Ⅳ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학생 지원	평가수거 ▶ 내·외부 출결 및 교육과정, 평가결과, 학업진척, 진급, 학생 생활기록부, 수업료 납부, 위탁 교육비, 급식비 처리 등 평가수거는 2025 1학년도 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매뉴얼(교육복지과) 참조 ▶ 운영 지원: 대안교실 위탁교육기관 운영에 대한 연도별 교육비 지원 ▶ 2025 대안교실 위탁교육기관 지정 현황	2026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 현황

=다음 페이지에 연결=

☐ 제1편 학교업무 효율화☐ 제3편 교육활동 지원

=다음 페이지에 연결=

쪽수

구분

현행

개정

148

Ⅲ.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

1. 2026년 원어민영어(EPIK)보조교사 사업

※ 목적

- 원어민영어보조교사의 소외지역 지원으로 영어 교육격차 해소
- 원어민영어보조교사의 효율적인 배치 운영을 통한 영어 공교육 강화
- 원어민영어보조교사의 (외국) 외국어교육활동프로그램 운영과 중·원어민보조교사배치의 다각화를 통한 국제화실현 지원

1.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선발사업 EPIK

※ 목적

- 원어민영어보조교사의 소외지역 지원으로 영어 교육격차 해소
- 원어민영어보조교사의 효율적인 배치 운영을 통한 영어 공교육 강화
- 원어민영어보조교사의 (외국) 외국어교육활동프로그램 운영과 중·원어민보조교사배치의 다각화를 통한 국제화실현 지원

※ EPIK이란? (English Program in Korea)

- 국립국어교육연구소는 그동안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운영을 다양화하는 것으로서, 교육부 국립국어교육원에서 주관하는 외국인 원어민영어보조교사를 경기도교육청이 채용하고 배치함

148

Ⅲ.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

※ 배치 인원: 초·중고 180명

구분	사업 구분	현황		내용
		운영실	원어민	
영어	EPIK 위탁 채용 및 배치	180명	185명	- 소외지역 초·중·고등학교 (중·원 지역 우선지원) - 연평균

※ 배치 인원: 초·중고 180명

구분	사업 구분	현황		내용
		운영실	원어민	
영어	EPIK 위탁 채용 및 배치	180명	185명	- 소외지역 초·중·고등학교(중·원 지역 우선지원) - 연평균

148

Ⅲ.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

※ 채용 및 관리 (지원(도교육청))

- 차용방법: 국립국어교육원 위탁 채용
- 경기도교육청 채용 및 학교 배치: 채용 공고, 심사 및 선발, 사전연수 진행 후 학교로 인송 배치
- 원어민영어보조교사의 교육 상담 및 운영을 위한 지역 코디네이터 배치 운영
- 2026년 EPIK 원어민영어보조교사 계약서 및 업무협약 개정 연례

※ 채용 및 관리 (지원(도교육청))

- 차용방법: 국립국어교육원 위탁 채용
- 경기도교육청 채용 및 학교 배치: 채용 공고, 심사 및 선발, 사전연수 진행 후 학교로 인송 배치
- 원어민영어보조교사의 교육 상담 및 운영을 위한 지역 코디네이터 배치 운영
- 원어민영어보조교사의 교육 상담 및 운영을 위한 우수 교사 활용
- 2026년 EPIK 원어민영어보조교사 계약서 업무협약 개정 연례

149

Ⅳ. 나이스
업무

‘나이스(NER)’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함께 운영하는 교육정보시스템을 의미하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으로 통칭을 이용한다.

‘나이스(NER)’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함께 운영하는 교육정보시스템을 의미하며, 나이스의 모든 입력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통발령 제55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따라야 한다.

149

Ⅳ. 나이스
업무

※ 인송서 발급 및 사용자 등록

- GPK 인송서 신규 발급 절차
- GPK 인송서 (신청서 제출 → 전자문서 전송: 제출 (도청) → 교육지원청에서 전송: 접수 후 담당자가 발급 → 전자서명 인증센터 출력(이제) 접수 → ‘인송서 발급(가발급)’ 인력 → 개인용 인송서 발급 (학교정보(인)가 코드 조회) 출력 → ‘인송서발급(가발급)’장에서 이름, 무인출판번호, 임시(가)발급번호(신청서에 작성한 순서) 입력) 압출 후 확인 → 학교정보와 인가 코드 확인 후 발급 출력 → 인송서가장

※ 인송서 발급 및 사용자 등록

- GPK 인송서 (신청서 제출 → 전자문서 전송: 제출 (도청) → 교육지원청에서 전송: 접수 후 담당자가 발급 → 교육청 담당자(가정)인송서(가) 발급 접수 → ‘인송서 발급(가발급)’ 인력 → 개인용 인송서 발급 (학교정보(인)가 코드 조회) 출력 → ‘인송서발급(가발급)’장에서 이름, 무인출판번호, 임시(가)발급번호(신청서에 작성한 순서) 입력) 압출 후 확인 → 학교정보와 인가 코드 확인 후 발급 출력 → 인송서가장

149

Ⅳ. 나이스
업무

※ 근무상황 신청

- 개인 근무상황 신청
- 개인 (이전, 병가, 공가, 특별휴가, 다계통휴, 결근, 연수, 기타) 등록 신청 및 배치
- (7분백(복)투)개인 근무상황관리(가)에서 신청
- 출결 신청
- (7분백(복)투)개인출결관리(가)에서 국사출결(관리), 국사출결(관리), 국사출결, 연수로 신청

※ 근무상황 신청

- 개인 근무상황 신청 (7분백(복)투)개인 근무상황관리(가)에서 신청
- 개인 (이전, 병가, 공가, 특별휴가, 다계통휴, 결근, 연수, 기타) 등록 신청 및 배치
- 출결 신청 (7분백(복)투)개인출결관리(가)에서 국사출결(관리), 국사출결(관리), 국사출결, 출결(연수로) 신청

149

Ⅳ. 나이스
업무

2. 나이스 교육업무

※ 학교(교과) 4대제 나이스(NER) 교육업무 매뉴얼(2025. 3. 기준)

- 내용: 학교업무등록, 학교정보, 교육과정, 학적, 학생생활, 성적, 학생부, 개별교육기록, 보전, 입학
- 사용 흐름
- 전송: 1599-1597(장기)영도나이스(가)발급(관리)
- 문자: 1401(가)발급(가)발급(관리)(http://help.ner.go.kr) - 인송서로 전송 (필터, 등록, 확인)
- 계좌로 발송
- 문자: 1599-1597(장기)영도나이스(가)발급(관리) - 인송서로 전송 (필터, 등록, 확인)
- 4대제 나이스 업무처리 도출 통합성
- 4대제 나이스: 전환, 배정, 관리자를 담당: 학생부, 교육업무 처리할 사용자 연수 영상 등
- 영도교육정보시스템: 유동부: 학생부(https://www.youtube.com/@goel)

2. 나이스 교육업무

※ 경기도 교육청(교육) 나이스(NER) 교육업무 매뉴얼(2025. 4. 기준)

- 내용: 학교업무등록, 학교정보, 교육과정, 학적, 학생생활, 성적, 학생부, 개별교육기록, 보전, 입학
- 학교(교과) 4대제 나이스(NER) 교육업무 매뉴얼(2025. 4. 기준)
- 영도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가(가)발급(관리) 사용자 매뉴얼(가)에서 PAF 다운로드 가능
- 전송: 1599-1597(장기)영도나이스(가)발급(관리)
- 문자: 1401(가)발급(가)발급(관리)(http://help.ner.go.kr) - 인송서로 전송 (필터, 등록, 확인)
- 계좌로 발송
- 4대제 나이스: 업무처리 도출 통합성
- 4대제 나이스: 전환, 배정, 관리자를 담당: 학생부, 교육업무 처리할 사용자 연수 영상 등
- 영도교육정보시스템: 유동부: 학생부(https://www.youtube.com/@goel)

149

Ⅳ. 나이스
업무

※ 교육정보

2025년도 경기도 초·중·고교 나이스(NER) 교육업무 매뉴얼(영도교육정보시스템, 2025. 3)

2025년 상반기 나이스(NER) 교육업무 매뉴얼(교육부·한국교육과정개발원, 2025. 2)

※ 교육정보

2025년도 경기도 초·중·고교 나이스(NER) 교육업무 매뉴얼(영도교육정보시스템, 2025. 4)

2025년 상반기 나이스(NER) 교육업무 매뉴얼(교육부·한국교육과정개발원, 2025. 2)

153

V.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6. 희망(연계)학교, 희망교실

※ 연계학교

- 경의: 성심여자 인성의 원동기 되어 희망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교사 중심의 교육 복지 운영 학교

6. 연계학교, 희망교실

※ 연계학교

- 경의: 성심여자 인성의 원동기 되어 희망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교사 중심의 교육 복지 운영 학교

쪽수	구분	현행	개정																								
155	I. 학교규칙 제·개정	3. 학교규칙의 제·개정 절차 - 학교규칙의 제·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조 제항 제9호에 따라 학교규정으로 정함 - 학교규정 제·개정 절차 역시 관련 법령에 정하는 기본적인 절차를 준수하며, 학교별 여건 및 주권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참고 예시)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학교규칙 공포·시행	3. 학교규칙의 제·개정 절차 - 학교규칙의 제·개정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항 제9호와 학교규정으로 정함 -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 역시 관련 법령에 정하는 기본적인 절차를 준수하며, 학교별 여건 및 주권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참고 예시)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학교규칙 공포·시행																								
156	I. 학교규칙 제·개정	[참고]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표(예시) <table border="1"> <thead> <tr> <th>절차</th><th>주최자</th><th>세부 주최내용</th></tr> </thead> <tbody> <tr> <td>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 구성</td><td>- 학생, 학부모, 교원으로 구성 - 학칙 제·개정 제반 사항 추진</td><td></td></tr> </tbody> </table>	절차	주최자	세부 주최내용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 구성	- 학생, 학부모, 교원으로 구성 - 학칙 제·개정 제반 사항 추진		[참고]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표(예시) <table border="1"> <thead> <tr> <th>절차</th><th>주최자</th><th>세부 주최내용</th></tr> </thead> <tbody> <tr> <td>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 구성</td><td>- 학생, 학부모, 교원으로 구성 - 학칙 제·개정 제반 사항 추진</td><td></td></tr> </tbody> </table>	절차	주최자	세부 주최내용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 구성	- 학생, 학부모, 교원으로 구성 - 학칙 제·개정 제반 사항 추진													
절차	주최자	세부 주최내용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 구성	- 학생, 학부모, 교원으로 구성 - 학칙 제·개정 제반 사항 추진																										
절차	주최자	세부 주최내용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 구성	- 학생, 학부모, 교원으로 구성 - 학칙 제·개정 제반 사항 추진																										
157	I. 학교규칙 제·개정	[참고]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절차표(예시) <table border="1"> <thead> <tr> <th>학업</th><th>세부 추진 내용</th><th>근거</th></tr> </thead> <tbody> <tr> <td>구성원생심의회위원회</td><td>- 학생, 학부모(보통), 교원, 전문가로 구성</td><td></td></tr> </tbody> </table>	학업	세부 추진 내용	근거	구성원생심의회위원회	- 학생, 학부모(보통), 교원, 전문가로 구성		[참고]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절차표(예시) * 학생생활규정은 정장 여부와 상관없이 해년 학교 구상업무에 반드시 반영하고 교육해야 함. <table border="1"> <thead> <tr> <th>학업</th><th>세부 추진 내용</th><th>근거</th></tr> </thead> <tbody> <tr> <td></td><td></td><td></td></tr> </tbody> </table>	학업	세부 추진 내용	근거															
학업	세부 추진 내용	근거																									
구성원생심의회위원회	- 학생, 학부모(보통), 교원, 전문가로 구성																										
학업	세부 추진 내용	근거																									
157	I. 학교규칙 제·개정	공포 및 보고 - 학교 구성원들이 개정된 규정을 알 수 있도록 학교 게시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공고 - 학생생활규정의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작성과 보고서 등이 없이 쉽게 별도의 알림창으로 공지 - 학교장발송시스템(사)을 이용 안내 - 가정통신 교육지원청 담당관으로 보고 (첨출기관 : 학교급별, 선두대표로, 전자확인체크리스트) 발송하면, 학교급별 및 단위장은 개정된 교육지침을 보고 성취 경기도혁신교육지구 제4년도 제4회 교육관련기관의 학교교육에 관한 협의회 개최 제1호	공포 및 보고 - 학교 구성원들이 개정된 규정을 알 수 있도록 학교 게시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공고 - 학생생활규정의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작성과 보고서 등이 없이 쉽게 별도의 알림창으로 공지 - 학교장발송시스템(사)을 이용 안내 - 가정통신 교육지원청 담당관으로 보고 (첨출기관 : 학교급별, 선두대표로, 전자확인체크리스트) 발송하면, 변경도 안되는 개정된 교육지침을 보고 성취 경기도혁신교육지구 제4년도 제4회 교육관련기관의 학교교육에 관한 협의회 개최 제1호 초·중학교 정보공개 업무지침서																								
157	I. 학교규칙 제·개정	▶ 학교규칙 표준편안(교감평가제, 2022. 10) ▶ 학교규칙 운영매뉴얼(초·중등)(교육과학기술부, 2012. 4)	▶ 학교규칙 표준편안(교감평가제, 2022. 10) ▶ 학교규칙 운영매뉴얼(초·중등)(교육과학기술부, 2012. 4) ▶ 2026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매뉴얼(행정안전부, 2026. 3)																								
158	II. 학교운영위원회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장려하고자 실시할 수 있도록 단위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교운영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단위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158	II. 학교운영위원회	① 의의: 학교 운영에 있어 학부모, 교사, 지역 인사 등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성있는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 하고, 지역사회와 학교공동체에 있는 다양한 교육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참여하는 기구 ② 설치 대상과요: 초·중학교, 공립학교, 사립학교, 특성화고 및 각종학교 / 유치원(유치원장명령위원회 위임받은 경우) ③ 법적 성격: 법질 위원회, 독립적인 위원회, 상설기구 ④ 구성: 위원장, 부위원장, 당연직위원, 간사 ⑤ 운영위원 명칭 및 구성방법 위헌판결: 학생 수에 따른 범위 내에서 5~15인 이내 <table border="1"> <thead> <tr> <th>학생수</th><th>위원수</th><th>비고</th></tr> </thead> <tbody> <tr> <td>200명 미만</td><td>5~8명</td><td>- 운영위원 최소 산율 기준달 3월 1일 (신설학교 고교입학 학생 수 기준)</td></tr> <tr> <td>200명이상 1,000명 미만</td><td>9~12명</td><td>-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 유지비용 고려사항 및 유지비용 학부모담률 각각 1억 이상 별도 추가</td></tr> <tr> <td>1,000명 이상</td><td>13~15명</td><td></td></tr> </tbody> </table> ※ 운영위원 구성 비율 및 구성내역에 따른 위헌판결 · 구성비율: 아래 표의 범위 내에서 학교 회의의 학교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정함	학생수	위원수	비고	200명 미만	5~8명	- 운영위원 최소 산율 기준달 3월 1일 (신설학교 고교입학 학생 수 기준)	200명이상 1,000명 미만	9~12명	-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 유지비용 고려사항 및 유지비용 학부모담률 각각 1억 이상 별도 추가	1,000명 이상	13~15명		① 의의: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및 학생의 요구를 학교교육이 적극 반영함으로써 학교운영에 대한 정책결정의 민주성 향상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학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 ② 설치 대상과요: 초·중·고등학교 및 각종학교 / 유치원(유치원장명령위원회 위임받은 경우) ③ 법적 성격: 법정 위원회, 독립적인 위원회, 상설기구 ④ 구성: 위원장, 부위원장, 당연직위원, 간사 ⑤ 운영위원 명칭 및 구성방법 위헌판결: 학생 수에 따른 범위 내에서 5~15인 이내 <table border="1"> <thead> <tr> <th>학생수</th><th>위원수</th><th>비고</th></tr> </thead> <tbody> <tr> <td>200명 미만</td><td>5~8명</td><td>- 운영위원 최소 산율 기준달 3월 1일 (신설학교 고교입학 학생 수 기준)</td></tr> <tr> <td>200명이상 1,000명 미만</td><td>9~12명</td><td>-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 유지비용 고려사항 및 유지비용 학부모담률 각각 1억 이상 별도 추가</td></tr> <tr> <td>1,000명 이상</td><td>13~15명</td><td></td></tr> </tbody> </table> ※ 운영위원 구성 비율 및 구성내역에 따른 위헌판결 · 구성비율: 아래 표의 범위 내에서 학교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정함	학생수	위원수	비고	200명 미만	5~8명	- 운영위원 최소 산율 기준달 3월 1일 (신설학교 고교입학 학생 수 기준)	200명이상 1,000명 미만	9~12명	-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 유지비용 고려사항 및 유지비용 학부모담률 각각 1억 이상 별도 추가	1,000명 이상	13~15명	
학생수	위원수	비고																									
200명 미만	5~8명	- 운영위원 최소 산율 기준달 3월 1일 (신설학교 고교입학 학생 수 기준)																									
200명이상 1,000명 미만	9~12명	-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 유지비용 고려사항 및 유지비용 학부모담률 각각 1억 이상 별도 추가																									
1,000명 이상	13~15명																										
학생수	위원수	비고																									
200명 미만	5~8명	- 운영위원 최소 산율 기준달 3월 1일 (신설학교 고교입학 학생 수 기준)																									
200명이상 1,000명 미만	9~12명	-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 유지비용 고려사항 및 유지비용 학부모담률 각각 1억 이상 별도 추가																									
1,000명 이상	13~15명																										
158	II. 학교운영위원회	▶ 2025년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행정안전부, 2025. 9)	▶ 2026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행정안전부, 2026. 3)																								
159	II. 학교운영위원회	□ 권선 반납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8조(중등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제39조(위원의 선출 등)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8조(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제39조(위원의 선출 등) ▶ 경기도민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제3조(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의 선출 등), 제4조(위원의 임기)	□ 권선 반납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8조(중등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제39조(위원의 선출 등)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8조(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제39조(위원의 선출 등) ▶ 경기도민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제3조(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의 선출 등), 제4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 및 부위원)																								
159	II. 학교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의 임기 ● 임기: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임기 개산: 해당 4월 1일부터 계산하며 첫 연임 때에는 달한 월부터 시작해 개산 · 위원회 재기가 될 경우 불출석률 초과 보충위원 임명은 찬양회의 결은 임기로 하며, 다음 달은 임기가 차액된 때부터 다시 임명 중주의 (14 회까지 재차 임명 시에는 경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신선회재 하도록 수 있음 · 신설학교로 최초로 신선회재 는 위원: 1년의 범위 내에서 해당하는 운영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함	□ 운영위원회의 임기 ● 임기: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임기 개산: 4월 1일 · 위원회 재가가 될 경우 불출석률 초과 보충위원 임명은 찬양의회의 결은 임기로 하며, 다음 달은 임기가 차액된 때부터 다시 임명 중주의 (14 회까지 재차 임명 시에는 경기에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신선회재 하도록 수 있음 · 신설학교로 최초로 신선회재 는 위원: 1년의 범위 내에서 해당하는 운영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함																								

[illegible]

=다음 페이지에 연결=

□ 제4편 정보

쪽수	구분	현행	개정
193	I.개인정보 보호	2025 경기도교육청 개인정보 보호업무 매뉴얼(정보보호담당관, 2025. 2.) 도움 자료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 4.) ▶ 개인정보 처리 총합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5. 7.) ▶ 운영현황 및 평가결과(정보통신위원회, 2024. 12.) ▶ 국가공공기관 AI제거 가이드라인(가정통신망, 2025. 12.) ▶ 2025 경기도교육청 개인정보 보호업무 매뉴얼(경기도교육청, 2025. 2.) ▶ 2024년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처리 준수사항 안내(국무총리, 2025. 8.)	2026 경기도교육청 개인정보 보호업무 매뉴얼(정보보호담당관, 2026. 3.)
199	IV.학교정보 안	2025 경기도교육청 교육기관 정보보안 업무 매뉴얼(정보보호담당관, 2025. 3.) 도움 자료 ▶ 2025 경기도교육청 교육기관 정보보안 업무 매뉴얼(정보보호담당관, 2025. 3.) ▶ 정보보안 업무관련 예시, 학교보안(경기도교육청, 2025. 8.) ▶ 경기도교육청 정보보안 가이드라인(경기도교육청, 2024. 2.) ▶ 학교 인터넷 보안 가이드라인(교육부, 2023. 11.)	2026년 경기도교육청 정보보안 업무 매뉴얼 학교용(정보보호담당관, 2026. 3.)
202	IV.학교정보 안	도움 자료 ▶ 2025년도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정보보안 추진계획(교육청정보보호, 2025. 2.)	도움 자료 ▶ 2026년도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정보보안 추진계획(교육청정보보호, 2026. 2.)

□ 제7편 교원역량개발

[illegible]

□ 제8편 체험학습

쪽수	구분	현행	개정
247	I.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현행 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호(산업안전법령 제 5) 2026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44호 개정 예정 2025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지침	개정 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호(산업안전법령 제 5) 2026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44호 개정 예정 2026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지침
247	I.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 운영에 대한 세부 지침 1년 단위 운영 원칙인, 학교 수업 참여로 교외체험학습 시간이 4시간 미만일 경우 반일 운영 허가 가능) - 학교는 신청서 검토와 학교장의 결정을 통해 교외체험학습 전에 허가 여부, 출석 인정 일수 등을 보호자에게 통보(결과는 해당 학교의 전권 규정에 따름)	☞ 운영에 대한 세부 지침 1일 단위 운영 원칙인, 학교 수업 참여로 교외체험학습 시간이 4시간 미만일 경우 반일 운영 허가 가능) - 학교는 신청서 검토와 학교장의 결정을 통해 교외체험학습 전에 허가 여부, 출석 인정 일수 등을 보호자에게 통보(결과는 해당 학교의 전권 규정에 따름)
248	I.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3. 학교장허가 교환학습 운영 ☞ 운영에 대한 세부 지침 - 해당 학년도 범위에서 학교장이 출석 인정 기간을 학적으로 정하여 출석으로 인정 - 보호자가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다른 학교와의 교환학습 실시 - 학교장허가 교환학습은 국·내외 한 달 - 학교장은 위법·위협학교에 공문 등 통행 가능 여부를 통지, 확인한 후 신청한 보호자에게 허가 여부를 통보 - 위법, 위문 학교장은 학교장허가 교환학습 결과통지서를 작성하여 개적 학교에 송부 - 제정학을 위기에 면하여 운영하는 조 지침	3. 학교장허가 교환학습 운영 ☞ 운영에 대한 세부 지침 - 해당 학년도 범위에서 학교장이 출석 인정 기간을 학적으로 정하여 출석으로 인정 - 보호자가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다른 학교와의 교환학습 실시 - 학교장허가 교환학습은 국·내외 한 달, 기간은 전교로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정함 - 학교장은 위법·위협학교에 공문 등 통행 가능 여부를 통지, 확인한 후 신청한 보호자에게 허가 여부를 통보 - 위법, 위문 학교장은 학교장허가 교환학습 결과통지서를 작성하여 개적 학교에 송부 - 제정학을 위기에 면하여 운영하는 조 지침
249	II.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 외부안전요원 우선 배치 - 학교장은 보조안전요원 외부안전요원을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하며, 배치자 어려움을 위한 내부안전요원을 또는 기타보안요원을 배치 -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및 수업활동은 학생 50명당 1명 이상 안전요원을 의무 배치 - 안전요원 직무면수 이수 교육(최근 2년 이내 연수 이수자)은 인솔교사와 안전요원 겸임 가능	- 외부안전요원 우선 배치 - 학교장은 보조안전요원 외부안전요원을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하며, 배치자 어려움을 위한 내부안전요원을 또는 기타보안요원을 배치 -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및 수업활동은 학생 50명당 1명 이상 안전요원을 의무 배치 - 안전요원 직무면수 이수 교육(최근 2년 이내 연수 이수자)은 인솔교사와 보조안전요원 겸임 가능
249	II.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 비상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비상연락체계 운영, 화재·지진 등 다발로 확인 및 비상상황 발생으로 교육 -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관리, 위·대체 환자 발생 방지에 유의	- 비상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비상연락체계 운영, 화재·지진 등 다발로 확인 및 비상상황 발생으로 교육 -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관리, 위·대체 환자 발생 방지에 유의
250	II.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 변경 및 취소 권리 - 부득이한 변경·취소 시 학부모(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 과정 및 결과를 학부모(학생)에게 안내 - 경비 집행은 회계 규정에 따라 학교장 책임 하에 집행 및 정산	- 변경 및 취소 권리 - 부득이한 변경·취소 시 교육공무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과정 및 결과를 학부모(학생)에게 안내 - 경비 집행은 회계 규정에 따라 학교장 책임하에 집행 및 정산
250	II.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 사후 평가 및 개선 자체 평가는 체험학습 종료 후 자체 평가회를 통해 개선 방안 모색	☞ 사후 평가 및 개선 - 자체 평가는 체험학습 종료 후 자체 평가회를 통해 개선 방안 모색 - 숙박형 체험활동은 컴피코프 사이트 "식중독 예방" 등에서 사전 정보 및 사후 결과 입력
251	II.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 정산 및 자체 평가(종료 후 10일 이내 정산, 정산일로부터 10일 이내 집행 내역 확보무 공제 또는 공제) - 사전/사후 정보·방역 협력(숙박형 체험학습은 의무 입력, 일일종은 학교 정보 입력)	- 정산 및 자체 평가(종료 후 10일 이내 정산, 정산일로부터 10일 이내 정산내역 공개) - 숙박형 체험활동은 사전/사후 정보·방역 입력
251	II.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 구성과 역할 - 위원장(당면적 교감)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학부(원)을 반드시 포함하여, 학생위원은 교육 여건에 따라 포함할 수 있음(인, 학생의 의견 수렴 결과는 반드시 거시하여 함) - 위원 구성 및 운영 방법은 학교 내부 규정에 정함 - 숙박형 체험활동(문화체험활동(수학여행), 소규모활동) 기본계획 검토 및 자료 - 대상이 전교는 또는 학년 전체인 경우 숙박형 체험활동 -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실시 통행은 결정 후 통행은 조사 결과에 따른 실시 여부 결정 -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시 학부모 의견을 포함한 사전조사 구성 및 시행 - 학부모 의견 통행 시 협심위원회의 의사 결정에 따라 허가 가능 - 일일종 현장체험학습은 단서를 선택하는 경우나 교외활동 활동이 포함된 경우인, 다른 각종성 여부를 심의	3. 현장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한 ☞ 구성과 역할 - 위원장(당면적 교감)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학생위원은 교육 여건에 따라 포함할 수 있음(인, 학생의 의견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 위원 구성 및 운영 방법은 학교 내부 규정에 정함 - 숙박형 체험활동(문화체험활동(수학여행), 소규모활동) 기본계획 검토 및 자료 - 대상이 전교는 또는 학년 전체인 경우 숙박형 체험활동 -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실시 통행은 결정 후 통행은 조사 결과에 따른 실시 여부 결정 -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시 학부모 의견을 포함한 사전조사 구성 및 시행 - 학부모 의견 통행 시 협심위원회의 의사 결정에 따라 허가 가능 - 일일종 현장체험학습은 단서를 선택하는 경우나 교외활동 활동이 포함된 경우인, 다른 각종성 여부를 심의 - 적외 관련 정보 전달(전서)에서 평가
252	II.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도움 자료 2025 개정안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요령(참고교육, 2025. 9)	도움 자료 2025 개정안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요령(참고교육, 2026. 2)

□ 제9편 학교도서관 운영

쪽수	구분	현행	개정																																																
253	I. 학교도서관 운영	1. 학교도서관 시설 및 공간 ▣ 학교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 ● 학교도서관의 위치는 학교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함. 도서관의 효과적 공간 운영을 위하여 컴퓨터실 등 연계성을 확보하되, 컴퓨터실과는 통합 공간이 아닌 별도 관리 운영되도록 설계 ● 초·중통합도서관도 도서관 설치 시 초등과 중등으로 분리하여 설치 ● 기존 1,000평 이상 자료 갖추고, 최소 연간 100종 이상 자료 추가 확보하되, 학교수에 따른 연간 장서수 확보 권장 <table><tr><th>평가 학교 도서관 시설 기준</th><th>12학급 미만</th><th>-18학급 미만</th><th>-24학급 미만</th><th>-30학급 미만</th><th>30학급 이상</th></tr><tr><td>면적</td><td>초등 2일 이상 중·고등 2.5일 이상</td><td>3일 이상</td><td>3.5일 이상</td><td>4일 이상</td><td>5일 이상</td></tr><tr><td>수용학생수(명)</td><td>36</td><td>41</td><td>57</td><td>84</td><td>90</td></tr><tr><td>연간 장서 확보량(권)</td><td>360</td><td>480</td><td>720</td><td>950</td><td>1,190</td></tr></table>	평가 학교 도서관 시설 기준	12학급 미만	-18학급 미만	-24학급 미만	-30학급 미만	30학급 이상	면적	초등 2일 이상 중·고등 2.5일 이상	3일 이상	3.5일 이상	4일 이상	5일 이상	수용학생수(명)	36	41	57	84	90	연간 장서 확보량(권)	360	480	720	950	1,190	1. 학교도서관 시설 및 공간 ▣ 학교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 ● 학교도서관의 위치는 학교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함. 도서관의 효과적 공간 운영을 위하여 컴퓨터실 등 연계성을 확보하되, 컴퓨터실과는 통합 공간이 아닌 별도 관리 운영되도록 설계 ● 초·중통합도서관도 도서관 설치 시 초등과 중등으로 분리하여 설치 ● 현행 12년 27만 9천평을 관할하도 학교수에 따른 연간 장서수 확보 권장 <table><tr><th>평가 학교 도서관 시설 기준</th><th>12학급 미만</th><th>-18학급 미만</th><th>-24학급 미만</th><th>-30학급 미만</th><th>30학급 이상</th></tr><tr><td>면적</td><td>초등 2일 이상 중·고등 2.5일 이상</td><td>3일 이상</td><td>3.5일 이상</td><td>4일 이상</td><td>5일 이상</td></tr><tr><td>수용학생수(명)</td><td>36</td><td>41</td><td>57</td><td>84</td><td>90</td></tr><tr><td>연간 장서 확보량(권)</td><td>360</td><td>480</td><td>720</td><td>950</td><td>1,190</td></tr></table>	평가 학교 도서관 시설 기준	12학급 미만	-18학급 미만	-24학급 미만	-30학급 미만	30학급 이상	면적	초등 2일 이상 중·고등 2.5일 이상	3일 이상	3.5일 이상	4일 이상	5일 이상	수용학생수(명)	36	41	57	84	90	연간 장서 확보량(권)	360	480	720	950	1,190
평가 학교 도서관 시설 기준	12학급 미만	-18학급 미만	-24학급 미만	-30학급 미만	30학급 이상																																														
면적	초등 2일 이상 중·고등 2.5일 이상	3일 이상	3.5일 이상	4일 이상	5일 이상																																														
수용학생수(명)	36	41	57	84	90																																														
연간 장서 확보량(권)	360	480	720	950	1,190																																														
평가 학교 도서관 시설 기준	12학급 미만	-18학급 미만	-24학급 미만	-30학급 미만	30학급 이상																																														
면적	초등 2일 이상 중·고등 2.5일 이상	3일 이상	3.5일 이상	4일 이상	5일 이상																																														
수용학생수(명)	36	41	57	84	90																																														
연간 장서 확보량(권)	360	480	720	950	1,190																																														
254	I. 학교도서관 운영	● 자료의 제작(자료 이용 불가능한 형태로 변환) 및 평가(소장정책 제정) - 도서관의 시책, 예산, 이용률, 자료의 관리와 선택 및 내용 등에 따라 자체 평가기준 수립(학교도서관 운영 규정이나 연간계획에 포함) - 평가결과 후계 학년(연차)마다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기준을 수립(학교도서관 운영 규정이나 연간계획에 포함) -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따라 자체 대상 목록 및 평가기준을 심사결과에 따라 내부결정하고 학교 도서관업무관리시스템(DLS) 소장처에 데이터에 제작 평가기준, 제작대상 목록 출력 및 보관 - 제작된 도서관은 라벨을 게재한 후 평가 - 평가대상 도서관의 처리방법: 평가 후 접수일 처리 가능 - 분석대상는 동일 도서관 변형이 확인(가운 등록번호 2026. 2) - 일반 평가 이후로 동일 자료를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한 변형 변형(가운 등록번호는 제작 후 새로운 번호 등록)	● 자료의 제작(자료 이용 불가능한 형태로 변환) 및 평가(소장정책 제정) - 도서관의 시책, 예산, 이용률, 자료의 관리와 선택 및 내용 등에 따라 자체 평가기준 수립(학교도서관 운영 규정이나 연간계획에 포함) - 자료의 평가 및 제작의 결과는 연간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회의 상의를 통해 결정할 경우에는 연간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평가 및 제작할 수 있다. - 평가결과 후계 학년(연차)마다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기준을 심사결과에 따라 내부결정하고 학교 도서관업무관리시스템(DLS) 소장처에 데이터에 제작 평가기준, 제작대상 목록 출력 및 보관 - 제작된 도서관은 라벨을 게재한 후 평가 - 평가대상 도서관의 처리방법: 평가 후 접수일 처리 가능 - 분석대상는 동일 도서관 변형이 확인(가운 등록번호 2026. 2) - 일반 평가 이후로 동일 자료를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한 변형 변형(가운 등록번호는 제작 후 새로운 번호 등록)																																																
254	I. 학교도서관 운영	도움 자료 ▶ 2025년 학교도서관 진흥 시행계획(행정교육과, 2025. 2) ▶ 2025년 평가교과서단 정책 추진 기본계획(행정교육과, 2025. 1)	도움 자료 ▶ 2026년 학교도서관 진흥 시행계획(행정교육과, 2026. 2) ▶ 2025년 평가교과서단 정책 추진 기본계획(행정교육과, 2025. 1)																																																

1. 학교도서관 시설 및 공간

▣ 학교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

● 학교도서관의 위치는 학교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함. 도서관의 효과적 공간 운영을 위하여 컴퓨터실 등 연계성을 확보하되, 컴퓨터실과는 통합 공간이 아닌 별도 관리 운영되도록 설계

● 초·중통합도서관도 도서관 설치 시 초등과 중등으로 분리하여 설치

● 학생 1인당 27권 이상의 장서를 관장하고 학교수에 따른 연간 초·중·고·대별 300평

평가 학교 도서관 시설 기준	12학급 미만	-18학급 미만	-24학급 미만	-30학급 미만	30학급 이상
면적	초등 2일 이상 중·고등 2.5일 이상	3일 이상	3.5일 이상	4일 이상	5일 이상
수용학생수(명)	36	41	57	84	90
연간 장서 확보량(권)	360	480	720	950	1,190

□ 제10편 학생 보건관리

쪽수	구분	현행	개정
256	I. 보건실 운영	도움 자료 ▶ 평가 학교보건 실무 가이드라인(체육건강교육과, 2020. 2)	삭제
265	V. 학생건강검사	도움 자료 ▶ 2025학년도 학생 건강검사 실시 계획(학교안내용) ▶ 학생 건강검사 관련 서식 및 참고자료 ▶ 학생 건강검사 관련 안내문 3.1. 4학년 건강검진 안내문 중고 학생 건강검진 안내문 3.2. 3, 5, 6학년 구강검진 안내문 학생 신체발달상황 결과 안내문 건강검진 결과 유소견자 안내문 3.4 치과주치의 사업 안내문 학생 건강검진기록 본 목록도 조사 안내문	도움 자료 ▶ 2026학년도 학생 건강검사 실시 계획(학교안내용) ▶ 학생 건강검사 관련 서식 및 참고자료 ▶ 학생 건강검사 관련 안내문 3.1. 4학년 건강검진 안내문 중고 학생 건강검진 안내문 3.2. 3, 5, 6학년 구강검진 안내문 학생 신체발달상황 결과 안내문 건강검진 결과 유소견자 안내문 3.4 치과주치의 사업 안내문 학생 건강검진기록 본 목록도 조사 안내문